

동작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동작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

-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입주자는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리비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는 동작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체주택 생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수도꼭지, 전구, 도어락 등 단순소모품 수리교체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부담주체는 입주자입니다.

우리 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65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공급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 3개소 총 6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주택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개인의 전용공간은 물론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입주자 간 서로 돕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주택으로 1인가구 어르신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주 신청 후 서류 수정과 반환은 불가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급개요

□ 공급일정

신청접수	심사	대상자 발표	계약 및 입주
2023. 11. 20.(월) ~ 12. 1.(금)	▶ 2023. 12. 4.(월) ~ 2024. 1. 12.(금)	▶ 2024. 1. 15.(월)	▶ 계약 '24. 2. 14.(수) ~ 2. 16.(금) 입주 '24. 3. 4.(월) ~ 5. 3.(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지됩니다.

□ 주택개요

구 분	추가 공급규모	전용면적	주차면수	공통사항
상도4동 미소주택 (성대로14길 77)	4세대	29.70~32.58m ²	11면	· 승강기 설치 · 커뮤니티실 有
사당4동 미소주택 (사당로20나길 58-6)	1세대	27.36m ²	8면	
대방동 미소주택 (여의대방로24길 113)	1세대	21.29m ²	4면	

□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 공동관리비는 별도 부담)

● 상도4동 미소주택(성대로14길 77)

호수	전용면적(m ²)	임대조건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301	29.70	12,080,000	157,300
304	28.32	11,640,000	151,700
404	32.58	13,500,000	175,900
501	25.99	10,780,000	140,400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임.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임.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사당4동 미소주택(사당로20나길 58-6)

호수	전용면적(m ²)	임대조건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	27.36	24,500,000	252,500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임.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임.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대방동 미소주택(여의대방로24길 113)

호수	전용면적(m ²)	임대조건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506	21.29	18,980,000	98,500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임.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임.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2.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65세 이상(1958.11.15.이전 출생)** 무주택 단독세대주(1인가구)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별도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가구로 인정하지 않음(사실 이혼 인정하지 않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모집공고일(2023.11.15.)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해당보장 취득상태에 있는 자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③ 공동체주택 의무사항 이행에 동의하는 자

※ 외국인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신청자격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불필요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46호, 2019.8.16.(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2. 1.(금) 9:00 ~ 18:00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세 부 내 용	발급처	부수
① 공급 신청서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란에 정자기입	신청자 작성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③ 무주택 서약서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란에 정자기입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란에 정자기입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동 주민센터	1부
⑥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전체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1부
⑦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1부
⑧ 수급자증명서/차상위 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中 1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해당 보장 취득상태에 있어야 함		1부
⑨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고시원 거주인 경우 기간이 명시된 입실확인증 등	신청자	1부
⑩ 거주실태 확인서 (해당 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주무관 또는 통장의 사실확인 ※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만 해당서류 제출	공무원 작성 (해당 시)	1부
⑪ 경제활동 참여증명서류 (해당 시)	최근 3년간 취·창업 및 공공일자리 사업 등 경제활동 참여자 ▶ 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창업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등 ▶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신청자 (해당 시)	

※ 제출서류는 계약 시 계약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발표

□ 발표예정일 : 2024. 1. 15.(월) 17시 이후

□ 발표방법 : 문자로 개별통보 및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 선정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주소 변경, 거소 이동 등 개인 사유로 인한 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적격 여부 검토 및 배점항목표(p.9 [별첨] 참조)에 의한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필요 시 방문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 동일 순위 경합 시 ① 동작구 전입일이 빠른 순 ②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우선 선정
-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담당함.
※대방동 미소주택의 소규모 하자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주요시설 하자보수는 동작구에서 담당
- 커뮤니티 공간 및 승강기 등 공동시설에 대해 수도료·전기료 및 승강기 유지 보수비, 정기검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동체 규약에 입각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휴 주차장 발생 시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
- 이 주택은 주택가에 위치하여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호실별 면적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음.
- 주택 및 호실 배정은 입주대상자 발표 후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며, 주택 및 호실배정 후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함.

5. 주택 및 호실 배정

□ 일 자 : 2024. 1월 중 ※일자 및 시간, 장소 추후공지

□ 내 용 : 입주자 준수사항 및 계약·입주 관련 교육, 주택·호실 배정

※ 입주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및 호실을 우선 선택합니다. 주택 및 호실배정 후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지됩니다.

6. 계약 및 입주

구분	일정	비고
계약	'24. 2. 14.(수) ~ 2. 16.(금)	○ 담당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49, 8544
입주	'24. 3. 4.(월) ~ 5. 3.(금)	○ 담당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 ☎ 02-828-5100~1

- 계약 시 보증금의 1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 잔금 납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실 경우, 입주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입주종료일 익일부터 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선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취소됩니다.

7. 유의사항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등 해당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00% 이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공가세대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는 입주대상자 발표 시 함께 발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입주대상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동작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선정사실 미확인 및 미계약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p.13[별첨] 참조)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선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계약)자가 된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됩니다.
<p>기금대출 등 입주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은행이 해당 공공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는 불가능하므로 입주예정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구청·동주민센터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타인에게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발생 원인 제공 행위, 애완 동물을 키우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타 입주자에 성희롱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선정(예정) 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SH공사 관악동작센터 문의)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하수도법 제2조, 65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 34조)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SH공사(동작구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동법 제49조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동법 제49조의 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57조의 3).

8.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주택관리팀 ☎ 02-820-9779, 9346, 9345
-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49, 8544
-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 ☎ 02-828-5100~1

별첨

□ 홀몸어르신주택 배점항목표

입주자 선정기준

1. 주거 형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반)지하·옥탑*·고시원·여인숙에 3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년 이상(2021. 11. 15.이전부터 연속 거주) : 5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다. 3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라. 3개월 미만 또는 해당하지 않음 : 0점

* 옥탑 : 건물 옥상에 있는 주거공간으로 건축물대장 등으로 옥상에 설치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1. 별도 가점

- ▶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각각 가점 1점을 부여.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2. 동작구 거주기간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동작구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10년 이상(2013. 11. 15.이전부터 연속 거주) : 5점
나. 5년 이상 10년 미만 : 3점
다.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라. 3년 미만 : 1점

3. 경제활동 기간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일자리아업 참여 또는 취업¹⁾·창업²⁾을 통한 경제활동의 합산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5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3점
다.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2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별첨 <상도4동 미소주택>

- 주택위치 : 동작구 성대로14길 77(상도4동 279-406)
- 주택 보안등의 사유로, 접수기간 전·중에는 사전 주택 공개하지 않습니다.
호실 평면도와 주택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원룸형 다세대 주택으로 1인 1세대 거주하며, 빌트인 가전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치 도>



<주택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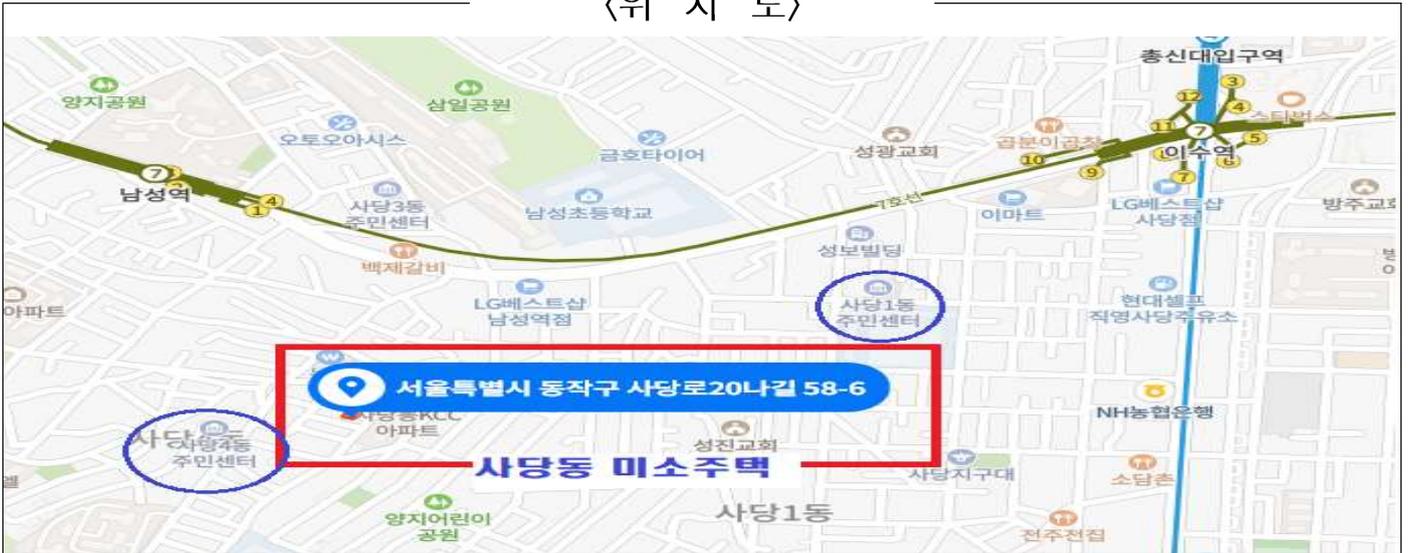


※ 참고용으로 각 동·호수별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평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당4동 미소주택>

- 주택위치 : 동작구 사당로20나길 58-6(사당4동 314-10)
- 주택 보안등의 사유로, 접수기간 전·중에는 사전 주택 공개하지 않습니다.
호실 평면도와 주택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원룸형 다세대 주택으로 1인 1세대 거주하며, 빌트인 가전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치 도>



<주택사진>



※ 참고용으로 각 동·호수별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평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대방동 미소주택>

- 주택위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13(대방동 407-40)
- 주택 보안등의 사유로, 접수기간 전·중에는 사전 주택 공개하지 않습니다.
호실 평면도와 주택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원룸형 다세대 주택으로 1인 1세대 거주하며, 빌트인 가전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치 도)



(주택사진)



※ 참고용으로 각 동·호수별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평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의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